

보도 일시	2022. 8. 30.(화) 10:00		
담당 부서 <총괄>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수희 (044-205-3731)
		담당자	서기관 장현석 (044-205-3769)
	지방재정경제실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책임자	과 장 정유근 (02-2100-4161)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2-2100-4166)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 관리체계 정비 -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 -

【 지방보조금법 개정 사례 】

- 수산업자 ㄱ씨는 '수산물 가공장비 설치지원 사업'에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설비 업체인 ㄴ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였다. ㄱ씨는 ㄴ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 ㄴ업체에서 ㄱ씨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4천8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소관 지자체는 ㄱ씨를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ㄴ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ㄴ업체도 ㄱ씨와 동일하게 지방보조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인건비를 수령하는 지방보조금 수령자 ㄷ씨는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지방보조금 1천5백만 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앞으로 ㄷ씨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지방보조금법”）」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2년 50조 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약 15조 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 (당초예산 기준) '18년: 약 39조 원, '20년: 약 47조 원, '22년: 약 54조 원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고,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확보한다.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둘째,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 (현행) 부정하게 교부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 →

(개선)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셋째,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위조·변경·훼손,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경우 등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先) 교부·집행, 후(後) 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先) 증빙, 후(後)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 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 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 고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 출자금·출연금,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

< 지방보조금법 상 지방보조금 개념·규모('22년 당초예산 기준) >

국고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국고보조금(약 7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순지방비(약 20조)
대응지방비(약 33조)	

⇒ 「지방보조금법」 상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순지방비”와 국고보조사업 관련 “대응지방비”를 포괄

□ 지방보조금 관련 주요개념 및 예시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
- (지방보조금수령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연계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수행점검 및 사후관리	자원봉사센터(법인) · 지방보조사업 수행 · 실적보고서 제출	자원봉사자(개인) · 인건비 수령

- (부정계약업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예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 산단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 실내공간정보 및 SW 구축을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자	부정계약업체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수행점검 및 사후관리	중소·중견기업	· 온라인 플랫폼 설계·개발 · 시설·장비 입차 및 용역 수행